

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평의원정수	재적평의원	참석평의원
11	11	7

I. 개최일 및 장소 : 2023. 04. 18.(화) 11:00, 4층 회의실

- 참석 평의원 : (교직원) 강응섭, 유복곤, 방진희, 금지환
(학 생) 이성화, 심규호
(동 문) 임경자

○ 불참 평의원 : (학 생) 김채현, (동 문) 유정원, (외 부) 윤경화, 최성우

* 배석 : 사무처 박선영 과장

II. 개회 선언 : 재적 평의원 11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

III. 심의 및 자문 안건

- 제1호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(안)
- 제2호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- 제3호 :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

IV. 회의 내용

가. 제1호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나. 제2호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- 강응섭 의장 :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한 후, 제1호 안건 “학칙 개정안” 과 제2호 안건 “학칙 시행세칙 개정안”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부서장인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(평의원)에게 설명을 요청하다.

-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 : 본 심의 안건은 조금 전 개최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배포된 회의자료와 같이 안건에 대해 개정안의 개정 사유,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신·구조문 대비표를 근거로 설명하다. (회의자료 제1호 ~ 제2호 안건)

대표 간서명	강응섭	유복곤	유복곤	금지환	금지환
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[학칙 개정 사유]

- 직제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부총장과 기획처를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부총장을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하며 재입학, 편입학, 학위수여 등 현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

[학칙 주요 개정 내용]

- 조직에 기획처를 추가함(제3조)
- 집중이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를 신설함(제9조의4)
-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(제14조, 제15조)
-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총장을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함(제35조)
- 과정별로 졸업 조건이 다른 사항을 반영하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(제38조)
-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총장을 추가하고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제외함(제45조의3)
- 기타 일부 명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함(제19조 제1항, 제24조제2항, 제27조제4항, 제27조의4제1항, 제27조의6, 제27조의9, 제29조의2제1항, 제30조제1항)

[학칙 시행세칙 개정 사유]

- 수강신청, 성적처리, 성적정정,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, 졸업요건, 논문제출자격 등 현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실제 학사 운영에 맞게 수정하고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

[학칙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]

- 수강신청에 재수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(제7조)
- 과오처리 성적 및 성적정정에 관한 승인 절차를 수정함(제10조, 제12조)
-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 점수를 수정함(제18조)
- 비논문과정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(제19조)
- 학위논문 제출 자격 시험의 명칭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함(제22조)
- 논문지도교수 선정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제24조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조문을 신설함(제23조의2, 제24조)

대표 간서명	강응섭	홍익명	유복곤	유복곤	금지환	금지환
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- 강응섭 의장 : 제1호 및 제2호 안건 설명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을 하도록 하다.
- 심규호 평의원 : 제29조의2(청강생)에서 학점 인정에 관련된 사항이 별도로 있는지 질의하다.
-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 : 청강생 운영 규정에 별도로 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인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고 답하다.
- 강응섭 의장 : 안건에 대해 평의원들의 동의와 재청,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한 전체 평의원이 찬성한다고 하여,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언하다. (찬성 7명 : 강응섭, 유복곤, 방진희, 금지환, 이성화, 심규호, 임경자 / 반대 0명)

다. 제3호 :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

- 강응섭 의장 : 다음으로, 제3호 안건 “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”을 상정하고, 회의자료에 대해 마찬가지로 업무담당 부서장인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(평의원)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다.
-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(평의원) : 배포된 회의자료와 같이 안건에 대해 자금계산서의 수입과 지출,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및 기본금, 운영계산서의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등 세부 내역과 각각 증가 또는 감소 사유를 순서대로 설명하다. 아울러, 동 결산안은 지난 04.07.에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(監事)가 실시한 내부 회계감사와 04.11.~04.12. 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(현장감사)를 받고 조정의견을 반영하였다고 부연 설명하다.

1) 자금계산서 결산(총액 2,511,609천원)

- 수입 :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,520,408천원, 전입및기부수입 449,150천원, 교육부대수입 74,907천원, 교육외수입 1,112천원, 미사용전기이월 자금 466,033천원

대표 간서명	강응섭	유복곤	금지환
--------	-----	-----	-----

- 지출 : 보수 1,020,064천원, 관리운영비 295,158천원, 연구학생경비 476,600천원, 교육외비용 186천원, 고정자산매입지출 192,989천원,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526,612천원

2) 대차대조표 결산

- 자산 : 7,501,339천원
- 부채 및 기본금 : 부채 537,286천원, 기본금 6,900,000천원
- 운영차액 : 64,054천원

3) 운영계산서 결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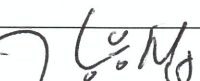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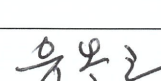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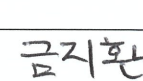
- 운영수익 : 2,066,563천원
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,520,408천원, 전입및기부수입 449,150천원, 교육부대수입 74,906천원, 교육외수입 22,098천원
- 운영비용 : 1,929,172천원
 보수 1,020,064천원, 관리운영비 411,304천원, 연구학생경비 476,600천원, 교육외비용 21,204천원
- 당기운영차액 : 137,390천원

- 강응섭 의장 : 안건 설명에 대하여 평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을 하도록 하다.
- 강응섭 의장 : 안건에 대해 평의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참석한 전체 평의원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고 동의한다고 하여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자문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언하다. (찬성 7명 : 강응섭, 유복곤, 방진희, 금지환, 이성화, 심규호, 임경자 / 반대 0명)

V. 폐 회

의장이 평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회의록에 대표로 간서명할 의원으로 강응섭 의장과 유복곤 평의원, 금지환 평의원이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,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: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 1부

대표 간서명	강응섭 	유복곤 	금지환 
--------	---	--	---

2023년 4월 18일

의 장 강응섭 강응섭
평의원 유복곤 유복곤
평의원 방진희 방진희
평의원 금지환 금지환
평의원 이성화 이성화
평의원 심규호 심규호
평의원 임경자 임경자

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자료

□ 일시 및 장소 : 2023. 04.18.(화) 11:00
4층 회의실

□ 심의 안건

제1호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제2호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□ 자문 안건

제3호 :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

예 명 대 학 원 대 학 교

[제1호 안건]

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- 직제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부총장과 기획처를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부총장을 대학원위원회의 및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하며 재입학, 편입학, 학위수여 등 현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조직에 기획처를 추가함(제3조)
- 집중이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를 신설함(제9조의4)
-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(제14조, 제15조)
-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총장을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함(제35조)
- 과정별로 졸업 조건이 다른 사항을 반영하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(제38조)
-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총장을 추가하고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제외함(제45조의3)
- 기타 일부 명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함(제19조제1항, 제24조제2항, 제27조제4항, 제27조의4제1항, 제27조의6, 제27조의9, 제29조의2제1항, 제30조제1항)

□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조(조직) 본교에는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 조직으로 <u>교학처, 사무처, 도서관 등을 둔다.</u></p>	<p>제3조(조직) 본교에는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 조직으로 <u>기획처, 교학처, 사무처, 도서관 등을 둔다.</u></p>	<p>조직에 기획처를 추가함</p>
<p><u><조 신설></u></p>	<p>제9조의4(집중이수제) <u>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교과목별 학점당 이수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중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	<p>집중이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</p>
<p>제14조(재입학) ① <u>제16조, 제17조, 제20조,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제적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 ③ <u>제19조, 제19조의2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/u></p>	<p>제14조(재입학) ① <u>본교에서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9조의2, 제34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</u></p>	<p>재입학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15조(편입학) ① <u>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15조(편입학) ① <u>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여석이 있을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편입학 조건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19조(제적)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 1. ~ 2. (생략) 3. 사망, 질병 등 학업수행이 불가능한 자 4. (생략) ② (생략)</p>	<p>제19조(제적)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<삭제></u>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4조(취득학점) ① (생 략) ② <u>논문작성 졸업자는 논문작성법을 이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4조(취득학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삭 제></p>	<p>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</p>
<p>제27조(성적관리) ① ~ ③ (생 략) ④ 졸업을 위해서는 본교가 정한 선수, 필수,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석사과정(논문제출과정)과 박사과정의 경우 <u>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및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</u> ⑤ 졸업예정자는 교수회에서 졸업사정을 통과하여야 한다.</p>	<p>제27조(성적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졸업을 위해서는 본교가 정한 선수, 필수, 각종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 석사과정(논문제출과정)과 박사과정의 경우 <u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과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</u> ⑤ 졸업예정자는 졸업사정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</p>	<p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명칭과 구성을 명확히 함</p> <p>졸업에 대한 절차를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27조의4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<u>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</u>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② (생 략)</p>	<p>제27조의4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<u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에 합격한 자가</u>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명칭과 구성을 명확히 함</p>
<p>제27조의6(논문작성)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<u>연구 지도를 받은 후</u>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제27조의6(논문작성)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<u>논문(연구)지도를 받은 후</u>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</p>	<p>용어를 수정함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7조의9(심사의결 및 재심사) ① <u>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분의2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</u> ② <u>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·보완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.</u></p>	<p>제27조의9(심사의결 및 재심사) ① <u>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분의2,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.</u> ② <u>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·보완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	<p>학위논문 심사 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 정함</p>
<p>제29조의2(청강생) ① <u>청강은 학위 또는 학점의 취득 없이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29조의2(청강생) ① <u>청강은 학위의 취득 없이 본교의 학문적 성과를 습득하기 원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청강생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30조(외국인입학) ① <u>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,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.</u>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30조(외국인입학) ① <u>외국인으로서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,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외국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 은 별도의 규정 에서 정함을 명 확히 함 (외국인 입학에 관한 내규)</p>
<p>제35조(구성) ① (생략) ② <u>위원회는 총장, 교학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/u></p>	<p>제3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/u></p>	<p>대학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총장 을 당연직에 추 가하고 자구를 수정함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38조(학위수여 및 명예졸업) <u>① 학위는 수료학점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자로서 총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.</u> ② ~ ④ (생략)</p>	<p>제38조(학위수여 및 명예졸업) <u>① 학위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과정별로 졸업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비논문과정 등을 반영하여 학위수여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45조의3(구성) <u>①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총장, 각 처장, 평생교육원장, 성서연구원장으로 구성한다.</u> ② (생략)</p>	<p>제45조의3(구성) <u>①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장으로 구성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부총장을 당연직에 추가하고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제외함</p>

[제2호 안건]

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- 수강신청, 성적처리, 성적정정,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, 졸업요건, 논문제출자격 등 현실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실제 학사 운영에 맞게 수정하고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

□ 주요 개정 내용

- 수강신청에 재수강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(제7조)
- 과오처리 성적 및 성적정정에 관한 승인 절차를 수정함(제10조, 제12조)
-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기준 점수를 수정함(제18조)
- 비논문과정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(제19조)
- 학위논문 제출 자격 시험의 명칭과 구성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자구를 수정함(제22조)
- 논문지도교수 선정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제24조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조문을 신설함(제23조의2, 제24조)

□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7조(수강신청) 등록을 필한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<u>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과 기 취득한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.</u> 2. ~ 5. (생략)</p>	<p>제7조(수강신청) 등록을 필한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1. <u>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과 기 취득한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재수강은 기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.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수강신청에 재수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</p>
<p>제10조(성적처리) 성적은 과목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확정된다. 1. <u>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과오 시 담당교수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,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</u> 2. ~ 5. (생략)</p>	<p>제10조(성적처리) 성적은 과목담당교수가 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확정된다. 1. <u>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과오 시 담당교수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,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성적정정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12조(성적정정) 성적통지서 내용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학처에 성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성적정정은 공고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과목담당교수를 경유 <u>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12조(성적정정) 성적통지서 내용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교학처에 성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성적정정은 공고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과목담당교수를 경유 <u>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성적정정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18조(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) 석사학위과정(논문 제출과정에 한함)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을 작성하기 전·후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(Comprehensive Examination)에 응시하여야 한다. 본 시험은 전공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와 논문에 관한 내용으로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이 주관하며, <u>A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</u> 2. 구술시험은 전공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지도교수와 관련 교수가 공동주관하며, <u>B+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</u> 3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부터, 박사과정은 4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. 4.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연2회 실시한다. 	<p>제18조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 석사학위과정(논문 제출과정에 한함)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에 합격하여야 한다. 해당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와 논문에 관한 내용으로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이 주관하며, <u>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</u> 2. 구술시험은 전공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지도교수와 관련 교수가 공동주관하며, <u>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</u> 3.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부터, 박사과정은 4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. 4.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연2회 실시한다. 	<p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</p>
<p>제19조(졸업요건) 본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학석사과정(목회학전공) 가. ~ 다. (생략) 2. 그 외 석사과정 가. ~ 나. (생략) 다. <u>비논문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을 종합시험(전공 및 외국어시험)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 3. 박사과정 가. ~ 나. (생략) 	<p>제19조(졸업요건) 본교 학생의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학석사과정(목회학전공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2. 그 외 석사과정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삭제> 3. 박사과정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	<p>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</p>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2조(논문제출자격) 본교의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1. <u>외국어 시험 및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</u> 2. 6학기 이상(석사는 4학기 이상)을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(석사는 1학기 이상) <u>연구 지도를 받은 자 또는 연구 지도를 받고 있는 자</u> 3. (생략)</p>	<p>제22조(논문제출자격) 본교의 학위과정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. 1. <u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)에 합격하여야 함</u> 2. 6학기 이상(석사는 4학기 이상)을 정규등록하고 2학기 이상(석사는 1학기 이상) <u>논문(연구)지도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</u>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명칭과 구성을 명확히 함</p> <p>용어 및 자구를 수정함</p>
<p><조 신설></p>	<p>제23조의2(논문지도교수) <u>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해당 교수와 주임교수(학과장)가 협의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	<p>제24조제1호의 논문지도교수 배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를 별도로 신설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함</p>
<p>제24조(심사위원)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지도교수는 당연위원이 된다. 1. <u>논문지도교수 배정은 학생의 신청과 해당 교수의 수락으로 교수회에 신청하며 교학처장과 교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.</u> 2. ~ 5. (생략)</p>	<p>제24조(심사위원)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지도교수는 당연위원이 된다. 1. <삭제> 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	<p>논문지도교수 배정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</p>

[제3호 안건]

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(안)

□ 자금계산서 결산(안)

구 분	2022회계연도 (당 기)	2021회계연도 (전 기)	내 용
예 산 액	2,513,192,952원	1,994,806,439원	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493,546천원 증가 2022회계연도 예산 대비 1,583천원 감소
결 산 액	2,511,609,606원	2,018,063,796원	
차기이월자금	526,611,839원	466,032,952원	

○ 자금계산서 결산(안) 세부내역

1. 수 입

(단위 : 원)

관 별	예산액(A)	결 산 액			증감(△) (B-A)
	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합계(B)	
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	1,515,910,000	1,520,407,880	0	1,520,407,880	4,497,880
5200 전입 및 기부 수입	446,500,000	0	449,150,000	449,150,000	2,650,000
5300 교육부대수입	83,400,000	0	74,906,750	74,906,750	△8,493,250
5400 교육외수입	1,350,000	743,653	368,371	1,112,024	△237,976
합계	2,047,160,000	1,521,151,533	524,425,121	2,045,576,654	△1,583,346
미사용전기 이월자금	466,032,952	39,871,116	426,161,836	466,032,952	0
총계	2,513,192,952	1,561,022,649	950,586,957	2,511,609,606	△1,583,346

2. 지출

(단위 : 원)

관 별	예산액(A)	결 산 액			증감(△) (B-A)
	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합계(B)	
4100 보수	1,141,300,000	949,769,442	70,294,880	1,020,064,322	△121,235,678
4200 관리운영비	469,100,000	8,010,447	287,147,349	295,157,796	△173,942,204
4300 연구학생경비	536,957,000	372,939,705	103,660,634	476,600,339	△60,356,661
4400 교육외비용	2,000,000	186,290	0	186,290	△1,813,710
4600 예비비	2,659,603	0	0	0	△2,659,603
1300 고정자산매입 지출	247,700,000	15,155,800	177,833,220	192,989,020	△54,710,980
합계	2,399,716,603	1,346,061,684	638,936,083	1,984,997,767	△414,718,836
미사용차기 이월자금	113,476,349	214,960,965	311,650,874	<u>526,611,839</u>	413,135,490
총계	2,513,192,952	1,561,022,649	950,586,957	2,511,609,606	△1,583,346

□ 대차대조표 결산(안)

구 분	당기말	전기말	차액(당기말-전기말)	비고
자 산	7,501,339,655원	7,344,562,551원	156,777,104원	
부 채	537,285,670원	517,898,981원	19,386,689원	
기 본 금	6,900,000,000원	6,900,000,000원	0원	
운영차액	<u>64,053,985원</u>	<u>△73,336,430원</u>	<u>137,390,415원</u>	운영계산서 상 당기운영차액과 동일

○ 대차대조표 결산(안) 세부내역

1. 자 산

(단위 : 원)

관항별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(내부거래 제거)	대차대조표	
				당 기	전 기
1100 유동자산	762,157,675	318,700,874	17,100,000	1,063,758,549	983,824,623
1110 유동자금	748,339,775	308,146,024	0	1,056,485,799	977,304,713
1120 기타유동자산	13,817,900	10,554,850	17,100,000	7,272,750	6,519,910
1300 고정자산	33,581,654	6,403,999,452	0	6,437,581,106	6,360,737,928
1310 유형고정자산	33,581,654	6,403,999,452	0	6,437,581,106	6,360,737,928
총계	795,739,329	6,722,700,326	17,100,000	7,501,339,655	7,344,562,551

2. 부채 및 기본금

(단위 : 원)

관항별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(내부거래 제거)	대차대조표	
				당 기	전 기
2100 유동부채	547,196,710	7,050,000	17,100,000	537,146,710	517,791,671
2120 예수금	18,239,180	0	0	18,239,180	16,232,720
2130 선수금	514,216,750	450,000	0	514,666,750	499,046,561
2140 기타유동부채	14,740,780	6,600,000	17,100,000	4,240,780	2,512,390
2200 고정부채	84,110	54,850	0	138,960	107,310
2220 기타고정부채	84,110	54,850	0	138,960	107,310
부채 총계	547,280,820	7,104,850	17,100,000	537,285,670	517,898,981
3100 기본금	248,458,509	6,715,595,476	0	6,964,053,985	6,826,663,570
3110 출연기본금	0	6,900,000,000	0	6,900,000,000	6,900,000,000
3130 운영차액	248,458,509	△184,404,524	0	<u>64,053,985</u>	△73,336,430
기본금 총계	248,458,509	6,715,595,476	0	6,964,053,985	6,826,663,570
부채 및 기본금 총계	795,739,329	6,722,700,326	17,100,000	7,501,339,655	7,344,562,551

□ 운영계산서 결산(안)

구 분	당 기	전 기	차액(당기-전기)	비고
운영수익	2,066,562,778원	1,713,607,074원	352,955,704원	
운영비용	1,929,172,363원	1,672,024,825원	257,147,538원	
당기운영차액	<u>137,390,415원</u>	<u>41,582,249원</u>	95,808,166원	

○ 운영계산서 결산(안) 세부내역

1. 운영수익

(단위 : 원)

관 별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(내부거래 제거)	운영계산서	
				당 기	전 기
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	1,520,407,880	0	0	1,520,407,880	1,150,360,400
5200 전입 및 기부 수입	0	449,150,000	0	449,150,000	482,879,000
5300 교육부대수입	0	74,906,750	0	74,906,750	60,806,650
5400 교육외수입	1,458,856	20,639,292	0	22,098,148	19,561,024
총계	1,521,866,736	544,696,042	0	2,066,562,778	1,713,607,074

2. 운영비용

(단위 : 원)

관 별	등록금회계	비등록금회계	(내부거래 제거)	운영계산서	
				당 기	전 기
4100 보수	949,769,442	70,294,880	0	1,020,064,322	956,489,294
4200 관리운영비	26,306,073	384,997,565	0	411,303,638	347,030,815
4300 연구학생경비	372,939,705	103,660,634	0	476,600,339	349,171,957
4400 교육외비용	929,943	20,274,121	0	21,204,064	19,332,759
합계	1,349,945,163	579,227,200	0	1,929,172,363	1,672,024,825
3100 기본금대체액	0	0	0	0	0
3132 당기운영차액	171,921,573	△34,531,158	0	<u>137,390,415</u>	<u>41,582,249</u>
총계	1,521,866,736	544,696,042	0	2,066,562,778	1,713,607,074